

# 영토와 영유권 분쟁 그리고 고독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2513891 이혜진

# 목차

1. 독도
2. 독도의 가치
3. 독도와 대한민국
4. 독도와 일본
5.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

# 독도

지리적 위치, 독도의 주요 지명, 지형 및 지질, 기후 및 기상, 육상생태계, 해양생태계, 인구 및 주민, 시설현황을 알아보자

# 독도

- 지리적 위치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며, 동도의 좌표 상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이며 서도의 좌표 상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이다.

주요 지점에서의 거리를 살펴보면 울릉도 기준 남동방향 87.4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의 오키섬 기준으로는 북서방향 15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보이나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 독도 좌표

동도 북위  $37^{\circ} 14' 22.7''$ , 동경  $131^{\circ} 52' 08.7''$

서도 북위  $37^{\circ} 14' 35.7''$ , 동경  $131^{\circ} 51' 47.6''$

(최고위점 기준)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 독도 주소

(우) 40240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분번호포함 총 101필지)

독도경비대(동도)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등대(동도)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  
도이사부길 63

주민송수(서도)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  
도안용복길 3

## • 규모

독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섬으로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m<sup>2</sup>이다.

동도는 유인등대 등 대부분의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높이는 98.6m, 둘레는 2.8km, 면적은 73,297m<sup>2</sup>이다.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740m<sup>2</sup>이며 전체적으로 험준한 원추형의 발달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심한 사면경사를 이루고 있다.

동도와 서도를 제외한 부속도서들의 총면적은 25,517m<sup>2</sup>이며, 동도와 서도 사이의 해협은 폭 151m, 길이는 약 330m, 수심은 10m 미만이다.



[독도의 구성]



[동도와 서도의 둘레길이]

## • 독도의 주요 지명

독도에는 26개의 주요 지형에 지명이 붙여져 있다. 지명의 유래는 형상에서 기원된 것, 어민들에게 구전된 것, 정밀조사 후 붙여진 것 등 다양하다. 정부는 인근 11개의 암초에 해양지명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 주요 지형 지명

1. 우산봉
2. 대한봉
3. 큰가제바위
4. 작은가제바위
5. 지네바위
6. 넙덕바위
7. 군함바위
8. 김바위
9. 보찰바위
10. 삼형제굴바위
11. 닭바위
12. 찻발바위
13. 찻대바위
14. 미역바위
15. 물오리바위
16. 솟돌바위
17. 부채바위
18. 얼굴바위
19. 독립문바위
20. 천장굴
21. 한반도바위
22. 탕건봉
23. 물골
24. 코끼리바위
25. 해녀바위
26. 전차바위

### 해양지명

1. 부채초
2. 동도초
3. 팽이초
4. 삼봉초
5. 강치초
6. 가지초
7. 북향초
8. 가제초
9. 군함초
10. 넙덕초
11. 서도초



## • 지형 및 지질

### 독도의 형성

460 만 년 전의 동해, 수심 2,000m 해저면에서 화산활동이 시작되어 수백 만 년에 걸쳐 독도를 형성하였다.

독도 화산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약 250만 년 전으로, 대규모 분출된 용암과 입자들이 굳어져 독도 해산 위에 독도 화산체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 이후로도 소규모 분출 및 관입(貫入)의 흔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침식작용이 우세하였고, 수면 위로 드러났던 독도 화산체의 대부분이 침식되어 현재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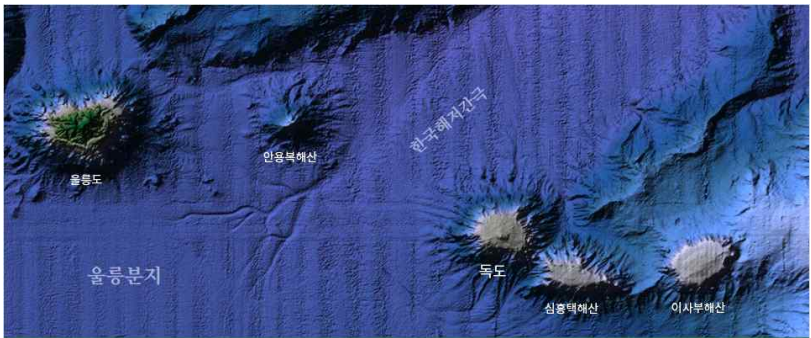


## 지형

독도는 평균수심 2,000m의 울릉분지 북동쪽 가장자리에서 솟아오른 형태이며, 기저부의 직경은 약 25~30km인 원탁형태 해산의 정상부에 형성되었다. 수면 위에는 동도와 서도의 2개의 바위섬과 약 89개의 바위와 암초가 드러나 있다. 동도와 서도는 폭 15m의 얇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다.

독도는 주상절리와 수평 주상절리가 나타나며, 이는 마그마가 분출하여 형성된 조면암, 조면안산암, 조면암맥에서 나타난다. 탕건봉과 그 주변은 조면안산암으로 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주상절리 경관이 보인다. 솟돌바위와 서도 동쪽사면 중앙부는 조면암맥으로 되어 있으며 수평 주상절리가 보인다.

동도는 최고봉이 98.6m로 정상에 비교적 평탄한 부분이 있고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동도의 중앙부에는 상단부 100 x 100m, 바닥 50 x 25m, 깊이 55~75m인 함몰부가 있으며, 그 아래 바닷물이 드나드는 동굴(천장굴)이 존재한다. 서도는 최고봉이 168.5m이며, 정상이 뾰족하고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원뿔형 봉우리로 되어 있다. 해안 단애에는 동굴이 많이 존재하며 북서쪽 해안의 물골 바위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은 해수 담수화시설의 설치 이전까지 독도 주민의 수원으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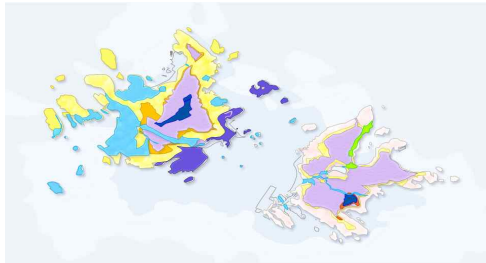


## 토양

독도는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이루어져있다. 토양은 산 정상부에서 풍화하여 생성된 잔적토이며 사질양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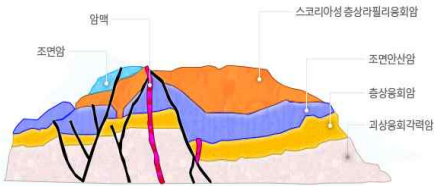
토심은 깊은 곳이 60cm 이상인 곳도 있으나 대부분 30cm 미만 토양입자가 식물뿌리에 밀착되어 있어 토양유실의 가능성은 낮다. 다만, 서도에서 일부 토양유실현상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독도의 토양은 점토, 미사, 모래가 약 1:4: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 토양은 산도가 일정하지 않아 안정된 산림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계절에 따라 pH3.36~8.02로 식생이 크게 변화한다. 이는 집단으로 서식하는 팽이갈매기의 배설물이 토양산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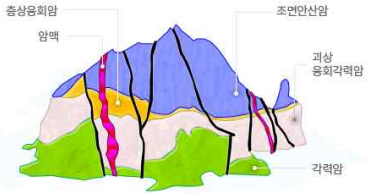




동도



서도



# • 기후 및 기상

## ■ 기온



독도의 연평균기온은 14.0°C(2012~2021년)로 같은 기간 울릉도(13.1°C)보다 0.9°C 높고, 서울(13.2°C)보다 0.8°C 높다. 월 평균 기온은 8월이 25.1°C로 가장 높고, 1월과 2월이 4.2°C로 가장 낮다.

## ■ 수온



독도 남쪽 연안에 위치한 독도 파고부이의 해양기상정보 자료(2016년~2021년)에 따르면 연평균수온은 17.5°C이고, 월 평균 수온이 가장 수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로 26.3°C이며, 가장 낮은 달은 3월로 9.9°C이다.

## ■ 바람



독도의 주풍은 서남서풍 또는 남서풍(2012~2021년)이며, 겨울철은 서남서풍이 우세하고, 여름철은 서남서 또는 동남동풍이 우세하다.

## ■ 파고



독도 남쪽 연안에 위치한 독도 파고부이의 해양기상정보 자료(2016년~2021년)에 따르면 연평균유파고는 0.9m이고, 월평균유파고가 가장 높은 달은 1월로 1.2m이며, 가장 낮은 달은 6월로 0.6m이다.

## 기상관측

기상청은 1981년 8월 수동 기상관측(일 5회)을 시작하였다. 1996년 3월 동도 정상부에 자동 기상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를 설치하여 자동관측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12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Automatic Surface Observation System)로 교체하고 독도의 기상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온, 바람, 강수량, 기압, 습도 등 기상 자료를 분 단위로 실시간 관측하고 있다. 독도 동도 남쪽 연안에 파고 부이를 설치하여 2010년 8월부터 파고, 파주기, 표층수온 등 해상 요소를 1시간 단위로 실시간 관측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 동쪽 3.2km 해상에 해양관측부이를 설치하고 2009년 3월부터 기온, 바람, 기압, 파고 등 기상 요소뿐만 아니라 층별 수온, 염분, 유속, 유향 등을 10분 단위로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

## • 육상생태계

### 식물

독도는 오랜 세월 동안 풍화되며 만들어진 흙이 땅을 얇게 덮고 있다. 쌓인 흙은 깊이가 고작 30cm 정도며, 경사가 심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는 흙이 많지 않다.

비가 내리면 흙이 흘러내리니 토양은 항상 건조하고, 소금기 머금은 해풍이 강하게 불어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야생화들이 봄이 되면 독도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은 약 50~60종에 달한다. 민들레, 질경이, 구절초, 개여뀌, 참억새, 강아지풀, 참나리, 사철나무, 해송, 해당화, 술패랭이꽃, 명아주, 해국, 개머루처럼 친숙한 식물도 있다. 그렇지만 소루쟁이, 갯까치수염, 갯이밥, 땅채송화, 큰조롱방가지뚝, 섬장대, 도깨비고비, 섬괴불나무, 왜정가락나물, 쇠비름, 갯괴불주머니, 기린초, 땃땃이덩굴, 박주가리, 털머위, 돌피처럼 생소하지만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식물도 있다.

독도는 표층이 얇은 바위섬이며, 심한 바람과 염분 등 혹한 환경에 적응한 식물상을 보이고 있다. 독도의 식생은 각종 생물의 서식처, 산란처, 피난처의 기능을 하며, 육상과 해양의 생물간 연관성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표본 역할을 한다. 특히, 식물종 침입 역사가 짧고 식물상의 성숙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식생천이 과정 등에 있어 그 연구가치가 높다.

독도는 위치상 아한대 남단 해역에 속해 있지만 해류의 영향과 비교적 온난 다습한 날씨 때문에 그 식물상이 아열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울릉도보다 생성시기가 약 150만년 이상 빨라 울릉도와는 다른 경로로 식물이 유입·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깨비쇠고비, 곰솔, 초종용 등의 자생식물과 왕호장근, 번행초, 개밀 등 귀화식물이 독도의 식생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포아풀, 금강아지풀, 닭의장풀, 둥근잎나팔꽃 등의 추가적 유입이 확인되었다.



<https://www.naturing.net/o/616521>



<https://smileessun.com/93>



[https://www.picturethisai.com/ko/sk/pomoea\\_header-5.html](https://www.picturethisai.com/ko/sk/pomoea_header-5.html)



독도는 식물종 급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연중 파도와 강한 해풍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면적이 좁고 해발고도가 낮으며 경사가 가파른 이유로 식생의 정착이 매우 어렵다.

토양층이 없는 건조한 해안절벽지대에는 땅채송화군락, 왕김의털군락, 해국군락, 갯제비쑥군락이 분포하고, 습기가 있는 바위틈에는 독도의 유일한 양치식물인 도깨비쇠고비군락이 분포한다.

완경사지에는 개밀-돌피군락이 우점하고 있으며, 토양 발달 정도와 인위적 간섭 정도에 따라 갯까치수염군락, 술패랭이꽃군락, 참억새군락, 번행초군락, 왕호장근군락, 참나리군락 등이 분포한다.

반면 급경사지에는 땅채송화군락, 왕김의털군락, 해국군락, 갯제비쑥군락과 함께 사철나무군락이 분포한다. 이들 군락 외에도 독도의 등대 서쪽 완경사지와 서도의 주민숙소에서 물골로 이어지는 완경사지에는 섬괴불나무, 사철나무, 보리밥나무, 동백나무 등의 식재목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땅채송화  
*Sedum oryzifolium* Makino



갯괴불주머니  
*Corydalis platycarpa* (Maxim.) Makino



갯까치수염  
*Lysimachia mauritiana* Lam.

## 곤충

독도에서 발견된 곤충은 50여종에 달한다.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노린재, 매미, 풀잠자리,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으로 딱정벌레가 15종류로 가장 많은 종을 차지한다.

독도에는 당도가 높은 과실을 맺는 식물이 없어서 초본식물의 잎이나 줄기에서 먹이를 얻는 매미목, 파리목 등이 곤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종으로는 자바꽃등에, 긴뺨모래거저리, 해변애녹슬은방아벌레, 모래섬벌레, 민집게벌레, 애긴노린재, 애꽃노린재, 애먼지벌레, 배검은꼬마개미, 독도장님노린재, 섬땅방아벌레, 초록다홍알락매미충 등이 있다.

나비목(호랑나비, 작은멋쟁이나비 등) 및 잠자리목(왕잠자리, 된장잠자리 등)의 비례성 곤충이 발견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본이나 울릉도에서 태풍 등의 영향을 받아 날려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조류

봄이 되어 번식기가 시작되면 독도의 하늘은 온통 갯이갈매기로 가득하다.

독도에 사는 바닷새로는 갯이갈매기, 쇠가마우지, 바다제비, 습새 등이 있다. 독도에서 발견된 새 종류는 12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월에 관찰된 새로는 해오라기, 황로, 흑비둘기, 매, 갯이갈매기, 개똥지빠귀, 바다직박구리, 멧새, 딱새, 되새, 방울새, 까마귀 등 30여종에 달한다.

그리고 10월 독도에서 관찰된 새로는 솔개, 매, 황조롱이, 흑비둘기, 종다리, 노랑할미새, 딱새, 개똥지빠귀, 숲새, 족새, 되새, 방울새, 섬참새 등 20여종이 된다. 계절에 따라 종 숫자가 다른 것은 봄, 가을 철새들이 이동하다가 날개를 쉬기 위해 독도에 잠시 머물기 때문이다.

독도는 우리나라 주변을 지나는 철새 뿐 아니라 먼 거리를 지나가는 나그네새의 중간 기착지, 태풍과 폭우 등 불규칙한 기상조건에서 조류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섬으로 조류생태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왔다.

독도에서 번식하는 대표적인 조류로는 갯가리새와 바다제비가 있다. 갯가리새는 4월에서 6월 사이 8,000~10,000여 마리가 번식을 위하여 독도를 찾고 있다. 바다제비의 번식기는 7월에서 8월 사이로 부드러운 흙이 있는 경사면에 굴을 파고 산란한다. 이 밖에도 독도에서 번식하는 조류로는 습새, 뿔쇠오리, 매 등이 있으며, 나그네새로는 진홍가슴, 흰배멧새, 유리딱새 등이 관찰되었다.





감태  
*Ecklonia cava*



청각  
*Codium fragile*



계우무  
*Padina crassa*

## • 해양 생태계 해조류

독도 주변 해역은 동해안으로 북상하는 동한난류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북한난류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해조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갖는다.

현재까지 독도에서 관찰된 해조류는 녹조류 7과 9속 26종, 갈조류 14과 37속 67종, 홍조류 30과 82속 160종이며 해산종자식물 1종을 포함하여 총 250여 종에 달한다.



유착나무돌산호  
*Dendrophyllia ciliata*



거북손  
*Pollicipes ornata*



바위게  
*Pachygrapsus crassipes*

## 해양무척추동물

독도의 조간대에는 검은큰따개비, 거북손, 조무래기따개비, 바위게, 갯강구 등의 갑각류와 홍합, 군부, 팽이고둥 등의 연체동물, 자포동물 중 해변말미잘류의 종들이 우점하며, 조하대에는 홍합, 검은테군소, 군소, 큰빨강따개비, 삼각따개비, 태생굴, 불산호류, 무쓰뿌리돌산호, 넓적근적해면, 불똥해면, 짧은가시거미불가사리 등이 점한다.

서도의 서측 수심 25m 부근에서 나무돌산호와에 속하는 유착나무돌산호의 국내 최대군집 (폭 5m, 높이 3.3m)이 발견되었다. 유착나무돌산호는 남해안의 청정해역에서 흔히 발견되던 종이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서식지가 감소함에 따라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지정)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환경부 지정)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해면동물 12종, 자포동물 60종, 연체동물 179종, 환형동물 77종, 절지동물 중 갑각류 143종, 극피동물 39종 등을 포함하여 총 520여종의 해양 무척추동물이 독도에서 발견되었다.



검복  
*Takifugu porphyreus*



돌돔  
*Oplegnathus fasciatus*



용치놀래기  
*Seriola lalandi*

## 어류

독도 연안에서 확인된 어류는 총 180여종에 달하나 해류와 수온 변화에 따라 변한다.  
특히 봄에는 약 15종에 불과하나, 여름 가을로 접어들면 60여 종으로 증가한다.

암반이 발달한 곳에는 자리돔, 흑돔, 콩치, 방어, 말쥐치, 연어병치, 놀래기, 복어, 전어, 부시리, 가자미, 도루묵 등이 서식하며, 동도와 서도 사이 수심이 얇은 지역에서는 뱀에돔, 돌돔, 볼락류 등 정착성 물고기들의 유어, 치어가 서식한다.



## 해양포유동물

예전에는 독도 주변 바위섬에 해양 포유류인 강치가 많이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강치들이 앉아 쉬던 바위는 가제바위라는 이름으로 아직 남아있다. 강치 또는 가제라고도 불려 가제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는 강치가 가제라고도 불렸기 때문이다. 강치는 가지어 또는 가제로도 불렸던 바다사자과의 해양포유동물이며, 1900년대 초까지도 독도에서 떼 지어 실었으나 일제강점기 일본 어부들의 남획 등으로 멸종되었다. 점박이 물범, 큰 바다사자, 물개 등은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서 가끔 목격되고 있다.



<https://www.libric.org/myboard/read.php?Board=spcont&id=9031>



<https://www.esocia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0>

## • 인구 및 주민

독도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독도경비대원 약 40명,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소속의 독도 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소속의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있다.


독도의 주민은 고 최종덕씨가 1965년 3월에 최초로 거주했으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은 14명(14세대)이 등록되어 있다.

‘독도로 본적·주소 옮기기’는 1981년 울릉도 어부 고 최종덕씨가 고기잡이를 위해 독도로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2005년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 이후 본격화 되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독도를 등록기준지로 둔 우리나라 국민은 3,437명이다.


또한 2010년부터 독도 관람객 중 희망자에 한해 울릉군에서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외국인 1,663명을 포함하여 총 44,421명(2018년 12월 기준)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하였다.

# 민간인 거주 연혁 및 관련단체 민간인

1


 최종덕  
(최초거주자)

-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 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어로활동(1965. 3.), 시설물 건립 착수 (1968. 5.)
- 독도를 주소지로 주민등록 최초 등재(1981. 10.)
- 사망(1987. 9.)

 조준기  
(최종덕의 사위)

- 울릉도 주민으로 부부가 독도에 주민등록 전입(1986. 7.), 다른 지역으로 전출(1992.)

2

 김성도  
(독도 1호 사업자)

- 부인 김신열씨와 주민등록 전입 (1991. 11.)
- 독도주민숙소 공식 거주자로 동절기에는 울릉도에 거주
- 사망(2018. 10.)


3

 송재욱  
(푸른독도가꾸기모임회원)

- 최초로 독도에 호적 전적
- 서울 거주

4

5

 황백현  
(독도유인도화국민본부 의장)

-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 시작(1999. 11.)

# 시설현황



해당	시설명	개수	설치/건축 연도
해당	집안시설	1개소	1997년 11월 건설
	독도등대	1개소	1954년 8월 설치
	경비대 숙소	1동	1997년 8월 증축
	급수시설	조수기1기, 해수 및 담수 저장탱크 5개	1997년 8월 증축
	식품저장시설	창고 1동	1997년 7월 준공
	발전실	1동(발전기 4대)	1998년 7월 설치
	기상장비(ASOS)	기상관측장비 1식	2009년 12월 설치
	태양광발전	5식(독도경비대3식, 독도등대 2식)	2009년 12월 설치
	방사능측정기	1식	2011년 4월 설치

서도	시설명	개수	설치/건축 연도
서도	선가장	1개소	2003년 7월 설치
	주민숙소	1동	2011년 8월 증축
	서파도충격시설	옹벽15m	2007년 5월 건립
	급수시설	저장탱크 1식, 조수기 2식	
	발전기	2대	
	유류탱크	1식	

# 독도의 가치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 독도의 가치

-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

문화재청은 독도를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하였으며 1999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9월에는 환경부고시로 특정도서로 지정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 풍성한 황금어장 독도

독도어장의 특색

청정수역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해산물이 다양하게 많이 잡힘

- 자연환경

독도의 어류는 1997년 독도 연안 어류 조사 시 58종이 확인되었으나 그 후 2008년 총 19종이 추가되어 독도연안의 어류는 총 77으로 기록되고 있다.

- 지하자원

  - 심층수

바다 속 200미터 이하에서 퍼 올리는 해양 심층수는 태양 빛이 닿지 않아 광합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미네랄과 유기질이 풍부

  - 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이 얼음과 유사한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가스 여기에 포함된 탄소의 양은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에너지의 두 배이상

- 경제

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양을 비롯, 통과통항, 군도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 포함

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해통항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협약은 군도 수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협약은 대륙붕범위를 종전의 지질학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재정의하고 있다.

협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



# 독도와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장들을 알아보자

#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영토 인 근거

512년 우산국 복속

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한다.

『동국문헌비고』(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1625년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한 것이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도 한다.

1693년 안용복(安龍福) 일본 납치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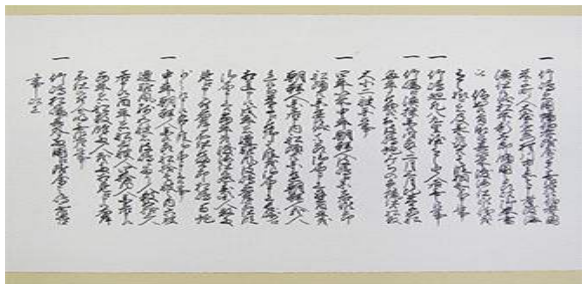
라카와(大谷·村川)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한다.

1694년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한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한다.



## 1695년 일본 돗토리번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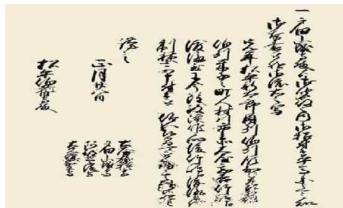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 고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1696년 1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1696년 1월 28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했다.(1699년).



5월. 안용복(安龍福) 일본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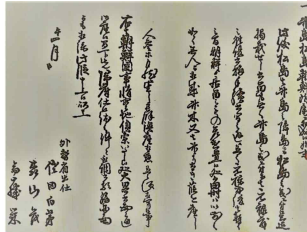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이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다.

1770년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이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다.



출처 : 김경미, 독도의 역사 이야기, 독립기념관, 2011

1870년 일 외무『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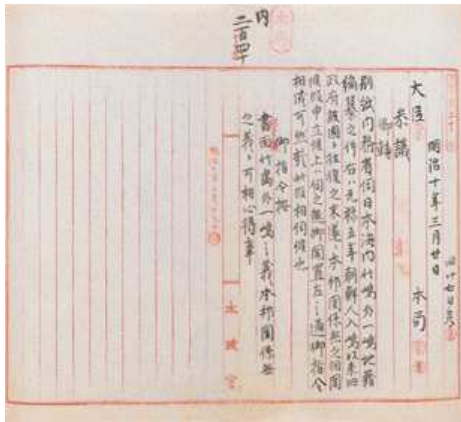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정관(太政官)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이다.





1900년 칙령(勅令)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鬱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



1905년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린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입니다.

SCAP(연합군 총사령관)문서에 나타난 일본 통치권으로 부터 제외되는 지역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규정. 1946. 1. 29

聯 日本統治, 行政制限區域에 關한 SCAP文告(SCAPIN 677)  
1946. 1. 29

SCAP Memorandum Concerning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SCAPIN 677 29 January, 1946

1.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or over an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s within such areas.
2. Except as authorized by this Headquarters,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not communicate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with any other persons outside of Japa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routine operation of authorized shipping, communications and weather services.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4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including (a) Uotsuryu (Uhang) Islands, Lianmar Rocks (Taka Island) and Quelpert (Saioha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Ryuan)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ri, Nam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Shikashi or Ogaseri) Island Group, and Pteris Vela (Okinawa Is.), Marcus (Miyazaki Is.) and Gageo (Nakano Is.)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ema (Hapoman) Island Group (including Saioha, Yari, Akiyori, Shobotsu and Teraka Islands) and Shobutan Island.
4. Further area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are the following: (a) all Pacific Islands seized or occupied under mandate or otherwise by Japa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n 1914, (b) Micronesia, Formosa and the Pescadore (I) Korea and (c) Karafuto.
5. The prohib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 viol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ain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e Potsdam Declaration.
7.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prepare and submit to this Headquarters a report of all governmental agencies in Japan the functions of which pertain to areas outside of Japan as defined in this directive. Such report wi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functions,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agencies concerned.
8. All records of the agencies referred to in paragraph 7 above, will be preserved and kep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is Headquarters.

(譯文) 關係重要文書集, 外務省 1918. 1. 1 pp. 487-488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독도와 일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알아보자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다.

(주)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본국의 입장과 한국의 불법 점거 개요

- 일본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옛날 자료와 지도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 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 민간인이 정부(에도막부)의 공인 아래에 울릉도로 건너갈 때 다케시마를 항행의 목표로 삼거나, 또는 배의 중간 정박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강치나 전복 등의 포획에도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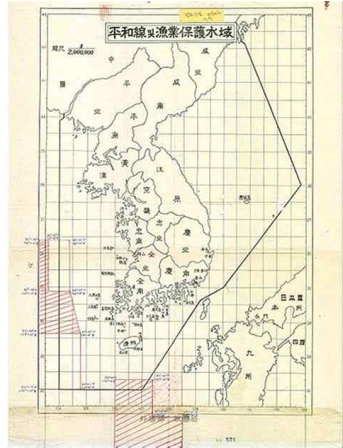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1900년대 초기 시마네현의 오키 섬 주민들로부터 본격화된 강치 포획 사업의 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국은 1905(메이지 38)년 1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영유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그 후 관유지 대장 등록과, 강치 보획의 허가, 국유지 사용료의 징수 등을 통한 주권 행사를 다른 나라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 없이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처럼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국의 영유권을 근대 국제법상으로도 여러 외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의 영토 처리 등을 실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9월 8일 서명, 1952년 4월 28일 발효)의 기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이 조약을 기초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없고 일본의 영토이다'라며 한국의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밝혀져 있다. 이러한 경위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되었고, 다케시마는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구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이 확인되어 있다. 또한 이 조약의 발효 후 미국은 일본국에 대해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그 신청을 받아 이미 협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일본국이 공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에서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은 명확히 인정되고 있었다.

-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전인 1952(쇼와 27)년 1월 한국은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넣었다. 이것은 분명히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일본국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즉시 엄중하게 항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후 다케시마에 경비대원 등을 상주시키고, 숙소와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한국의 힘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일본국은 한국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항의함과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한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여, 또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주1) (주2).
- 제2차 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온 일본국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를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쇼와 2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외면하는 현상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일본국은 앞으로도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다.

- (주1) 2012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다케시마에 상륙하였다. 그 이후로도 한국 정부, 국회 관계자가 다케시마에 상륙하였으며 최근에는 2016년 7월에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가 상륙하였다. 일본은 이들 사안마다 즉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심심한 유감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여 철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엄중하게 항의해 왔다.
- (주2) 국제법에 반하는 이승만 라인의 일방적 설정에 따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후 한국이 일본의 일관된 항의를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국제법상 증거력이 부정되어 영유권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 또한 한국은 다케시마 점거를 영유권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측으로부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했나요?

-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주권 침탈은 19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04년 일본은 강압에 의해 체결한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 기사 :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 외교청서에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8일 일본이 2025년 외교청서에 재차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 정서와 일본의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매년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별도로 항의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감사합니다